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51호 2016. 02. 22.(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44호 공시송달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45호 공시송달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46호 공시송달 공고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5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55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58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7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사완료 공고 -----	7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마중1로 25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2. 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2-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4-6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1로 25 (오류동)	2012-10-25	마중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지구72블럭3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17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3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42-28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42-30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5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64 (석남동, (주)우드뱅크)	2015-11-13	북항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ㄱ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56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45번길 68 (석남동, (주)우드뱅크)	2015-11-13	북항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ㄱ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57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58 (석남동, (주)우드뱅크)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22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60 (석남동, (주)우드뱅크)	2009-09-22	원창동과 석남동의 머릿글자를 따 명명	
9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3-14	인천광역시 서구 이든로 5 (오류동, 주식회사라인켄)	2012-10-25	"착하고 어질다" 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착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7-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49번길 15-1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1,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02.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399번길 24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81-3	건지로399번길 24	2016.02.11.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2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2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02. 17.

2. 점용·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금곡동 684-34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5m²

나. 기 간 : 2016. 02. 17. ~ 2021. 02. 16. (5년)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김**, 송**

나. 주 소 :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 2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 및 1-2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32호(2015.09.0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1-1 및 1-2호선, 사업명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 건설과(☎560-4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2.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도시계획선 분할에 따른 토지(면적) 등 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83-1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1-1 및 1-2호선)
 - 명칭 : 금곡동 소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결정	금회	결정	금회	
-	소로	1	1	10	10	313	249	
-	소로	1	2	10	10	551	55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열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13	대2-59	광2-4	일반 도로	광2-4		
-	소로	1	2	10	국지 도로	551	광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 도로	광2-4		

■ 용 지 조 서 (변 경)

금곡동 소로1-1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345-5	도	192	2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5-7	도	142	24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712-1	도	8	2	국	국토교통부				
	변경	-	-	-	-						
3	기정	346-3	도	4	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6-7	도	2	2	국	국토교통부				
4	기정	712-2	도	1	1	국	국토교통부				
5	기정	347-2	도	7	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7-10	도	1	1	국	국토교통부				
6	기정	산101-2	도	298	147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7-11	도	216	216	국	국토교통부				
7	기정	712	도	246	156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2-3	도	186	186	국	국토교통부				
8	기정	684-43	구	1756	146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4-53	구	41	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4-55	구	101	101	국	국토교통부				
9	기정	342-2	도	350	234	이애훈	금곡리 379				
						양복석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479				
						양석환	김포군 검단면 장기리 138				
						양재동	인천 서구 금곡동 420				
	변경	342-4	도	210	210	이애훈	금곡리 379				
						양복석	김포시 검단면 금곡리 479				
						양석환	김포군 검단면 장기리 138				
						양재동	인천 서구 금곡동 420				
10	기정	338-2	도	377	273	우주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7동 1353 에스케이아파트 101동 1403호				
	변경	338-14	도	3	3	우주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7동 1353 에스케이아파트 101동 1403호				
	변경	338-15	도	207	207	우주훈	서울시 강북구 미아7동 1353 에스케이아파트 101동 1403호				
11	기정	산100-2	도	198	178	양승근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125-5 신동아아파트2동 1102호				
	변경	338-17	도	175	175	양승근	인천직할시 남구 학익동 125-5 신동아아파트2동 1102호				
12	기정	산103-2	도	694	317	국	기획재정부				
	변경	338-19	도	249	249	국	기획재정부				

금곡동 소로1-1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13	기정	340-16	대	293	2	전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106길22,403호(역삼 동)	주식회사우 리금융저축 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근저당/ 지상권	
	변경	340-26	대	2	2	전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주로106길22,403호(역삼 동)	주식회사우 리금융저축 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근저당/ 지상권	
14	기정	340-20	전	642	1	국	기획재정부				
	변경	340-27	전	1	1	국	기획재정부				
15	기정	345-6	대	42	9	국	기획재정부				
	변경	-	-	-	-	-	-				
16	기정	346-4	도	172	164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6-8	도	146	146	국	국토교통부				
17	기정	346-1	도	49	35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6-6	도	33	33	국	국토교통부				
18	기정	산102-1	도	198	117	국	국토교통부				
	변경	346-10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343-1	도	129	94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343-4	도	91	9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0	기정	337-1	도	278	169	정윤근	경성부 운화정 79-2				
	변경	337-7	도	162	162	정윤근	경성부 운화정 79-2				
21	기정	711	도	248	196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1-1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22	기정	710	도	188	161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0-1	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23	기정	산106-1	도	496	286	국	국토교통부				
	변경	338-22	도	345	345	국	국토교통부				
24	기정	-	-	-	-	-	-				
	변경	338-20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25	기정	336-6	대	975	9	김충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9,1903동 1805호(주엽동,강선마을)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파주엘지 로지점)	근저당	
	변경	336-20	대	9	9	김충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9,1903동 1805호(주엽동,강선마을)	농업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파주엘지 로지점)	근저당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684-30	구	1,309	64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4-52	구	65	65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487-1	답	32	3	공	인천광역시				
	변경	487-3	답	3	3	공	인천광역시				
3	기정	487	답	583	1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변경	487-2	답	1	1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4	기정	486	전	605	6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변경	486-1	전	5	5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5	기정	485-1	대	1,207	50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163-5 대성연립 라동301호				
	변경	485-3	대	1	1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양재근	서구 금곡동 485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163-5 대성연립 라동301호				
6	기정	485-2	전	231	49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양경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923 동아아파트115동 1104호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163-5 대성연립 라동301호				
	변경	485-4	전	1	1	신현구	서구 금곡동 485				
						양경모	인천 연수구 동춘동923 동아아파트115동 1104호				
						양현모	인천 서구 가정동163-5 대성연립 라동301호				
7	기정	478-9	도	20	19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변경	478-14	도	19	19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8	기정	480-2	대	631	4	김계원	금곡리 480				
						양태희	금곡리 471				
	변경	480-3	대	3	3	김계원	금곡리 480				
						양태희	금곡리 471				
9	기정	716	도	685	561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6	도	223	223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6-4	도	1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6-5	도	187	187	국	국토교통부				
10	기정	482-6	도	24	24	양경모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42-11 한진케이티브uild 다동 402호	인천서부세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50-3	근저당/지 상권	
	변경	-	-								
11	기정	482-5	임	375	16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 번길41,208동1401호(마전 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497(마전동)	근저당	
	변경	-	-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	기정	482-4	임	1	1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92 번길41,208동1401호(마전 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497(마전동)	근저당	
	변경	-	-	-	-	-	-	-	-	-	
13	기정	산59-2	임	14,421	1,723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827북화아파트1 -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원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601(금곡동)				
						양원석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356-23				
	변경	470-16	임	821	821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827북화아파트1 -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원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601(금곡동)				
						양원석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356-23				
14	기정	산87-2	임	7141	606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트115-1104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923 동아아파트115-1104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 성지아파트102-1008				
						정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수지구32블럭 삼성아파트3-902				
	변경	470-21	임	229	229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 동아아파트115-1104				
						양경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923 동아아파트115-1104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 성지아파트102-1008				
						정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수지구32블럭 삼성아파트3-902				
15	기정	714	도	317	3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4	도	316	316	국	국토교통부				
16	기정	395	대	860	170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5	검단농업협 동조합/경인 북부수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33-7/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7-1(강화지점)	근저당/근 저당	
	변경	395-1	대	124	124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5	검단농업협 동조합/경인 북부수산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33-7/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7-1(강화지점)	근저당/근 저당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기정	396	전	202	202	신경식	금곡동 390					
	변경	396-1	전	120	120	신경식	금곡동 390					
18	기정	684-45	구	575	151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4-57	구	125	125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388-4	전	389	53	안규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4(금곡동)					
	변경	388-8	전	8	8	안규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4(금곡동)					
20	기정	388-3	전	1,274	385	신은균	금곡동 388					
	변경	388-7	전	185	185	신은균	금곡동 388					
21	기정	388-2	도	89	17	신은균	금곡동 388					
	변경	388-6	도	4	4	신은균	금곡동 388					
22	기정	388-1	도	23	2	신은균	금곡동 388					
	변경	388-5	도	7	7	신은균	금곡동 388					
23	기정	716-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6-1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24	기정	456-32	답	329	1	공	인천광역시					
	변경	456-45	답	1	1	공	인천광역시					
25	기정	456-1	전	2,322	107	최영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58 세광엔지리빌 109-206					
	변경	456-44	전	107	107	최영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58 세광엔지리빌 109-206					
26	기정	476	전	1,610	125	전득수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2동 1104호	조춘자	부천시 원미구 상동 26	근저당		
	변경	476-1	전	137	137	전득수	부평구 산곡동 124-1 현대아파트 502동 1104호	조춘자	부천시 원미구 상동 26	근저당		
27	기정	477-2	전	1,124	419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8-4	집단농업협 동조합 외 다수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지상권/근 저당 외 다수		
	변경	477-5	전	358	358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8-4	집단농업협 동조합 외 다수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지상권/근 저당 외 다수		
28	기정	477-1	전	337	139	양옥균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김부대왕로 2144					
						양인모	인천 서구 봉화로223번길38-2(금곡동)					
						양옥춘	인천 연수구 민우금로83번길12,126동404 호(동춘동,건영아파트)					
						양형모	서울 영등포구 구계금융로79,비동301호(여의 도동 한양아파트)					
						양은모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1144세번,텔몬트로드1239					
						양옥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41,3002동301호(중동 ,성산마을건영지엘)					
						양홍모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18054그린레인, 우드리지드라이브5976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변경	477-3	전	134	134	양옥균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김부대왕도 2144					
						양인모	인천 서구 봉화로223번길38-2(금곡동)					
						양옥춘	인천 연수구 면우금로83번길12,126동404 호(동춘동,건영아파트)					
						양형모	서울 영등포구 구제금융로79,비동301호(여의 도동 한양아파트)					
						양은모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1144세번,텔몬트로드1239					
						양옥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41,3002동301호(중동, 성산마을건영지엘)					
						양홍모	미합중국 펜실베니아주18054그린레인, 우드리지드라이브5976					
29	기정	478-3	전	271	108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변경	478-13	전	104	104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30	기정	478-2	대	182	3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변경	478-12	대	3	3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31	기정	478-10	전	102	62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변경	478-15	전	61	61	양종석	마전리 827 목왕아파트 3동 406호					
32	기정	478-11	전	194	150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파트)	경기남부수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중부대로66(인계동)(서 신지점)	근저당/지 상권		
	변경	478-16	전	122	122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파트)	경기남부수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중부대로66(인계동)(서 신지점)	근저당/지 상권		
33	기정	479-3	대	283	271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파트)	경기남부수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중부대로66(인계동)(서 신지점)	근저당/지 상권		
	변경	479-4	대	122	122	이화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월인재로88,115동 501호(동춘동,삼환아파트)	경기남부수 산업협동조 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중부대로66(인계동)(서 신지점)	근저당/지 상권		
34	기정	산60-2	임	981	1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십곡동 342-11 한진게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50-3	근저당/지 상권		
	변경	-	-	-	-	-	-	-	-	-		
35	기정	산60-3	임	1,358	970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십곡동 342-11 한진게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50-3	근저당/지 상권		
	변경	470-17	임	597	597	양정모	인천광역시 서구 십곡동 342-11 한진게이트빌 디동 402호	인천서부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450-3	근저당/지 상권		
36	기정	470-9	임	208	173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97(마전동)	근저당		
	변경	470-22	임	144	144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97(마전동)	근저당		
37	기정	470-4	임	333	22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97(마전동)	근저당		
	변경	-	-	-	-	-	-	-	-	-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8	기정	469-2	임	302	91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1502호(논 현동,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변경	-`	-	-	-	-	-				
39	기정	469	전	1,290	3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1502호(논 현동,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변경	-`	-	-	-	-	-				
40	기정	산74-4	임	250	5	황재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235,1007동1502호(논 현동,별빛마을웰카운티아파트)				
	변경	-`	-								
41	기정	산74-1	임	3,017	180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827복화아파트1 -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601(금곡동)				
						양원석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356-23				
						양희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102,1542동1302호(상 동,한아름)				
	변경	470-18	임	37	37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1401 호(마전동,인천검단힐스테이트 2차)	양성모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827복화아파트1 -106	근저당	
						양성모	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41,208동 1401호(마전동, 인천검단힐스테이트2차)				
						양원석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601(금곡동)				
						양원석	인천 서구 금곡동 356-11				
						양희선	인천 서구 금곡동356-23				
						양희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102,1542동1302호(상 동,한아름)				
42	기정	산86	임	1091	542	양경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춘동 연수지구32블럭 삼성아파트3-902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성지아파트102-1008				
						정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수지구 32블럭 삼성아파트 3-902				
	변경	470-20	임	335	335	양경모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춘동 연수지구32블럭 삼성아파트3-902				
						양범모	인천 남구 관교동 13-9성지아파트102-1008				
						정관수	인천 남구 동춘동 연수지구 32블럭 삼성아파트 3-902				
43	기정	산85	임	99	41	이윤중	금곡동 399	-	-	-	
	변경	470-19	임	17	17	이윤중	금곡동 399	-	-	-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4	기정	399-1	대	1157	315	이윤중	검단면 금곡리 399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근저당/지 상권	
	변경	399-3	대	204	204	이윤중	검단면 금곡리 399	검단농업협 동조합	인천 서구 마전동 697-50	근저당/지 상권	
45	기정	399-2	대	598	40	재단법인대한예수장 로교회서울노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 회관신용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근저당	
	변경	399-4	대	23	23	재단법인대한예수장 로교회서울노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 회관신용협 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근저당	
46	기정	397	대	330	215	임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20 성옥빌라 102호				
	변경	397-2	대	146	146	임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20 성옥빌라 102호				
47	기정	397-1	대	249	6	임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20 성옥빌라 102호				
	변경	397-3	대	6	6	임인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56-1	-	-	대지권	
						양승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4-20 성옥빌라 102호				
48	기정	404-5	전	225	45	신영식	금곡동 397				
	변경	404-21	전	44	44	신영식	금곡동 397				
49	기정	404-17	대	22	5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1, 3층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검단지 점)	근저당	
	변경	404-24	대	4	4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1, 3층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검단지 점)	근저당	
50	기정	404-15	전	124	60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1, 3층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검단지 점)	근저당	
	변경	404-23	전	57	57	유병천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안길1, 3층호(금곡동)	주식회사우 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검단지 점)	근저당	
51	기정	404-8	대	605	23	신연식	금곡동 297				
	변경	404-22	대	22	22	신연식	금곡동 297				
52	기정	404-3	도	567	1	정계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강석로110,511-1501(마두동 ,강촌마을)				
						정계영	서울 강북구 노혜로13길92(수유동)				
						정교숙	서울 강남구 연주로30길57 이동4502호(도 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정교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01,52-1102(압구 정동 한양아파트)				
						정기영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30,1507-702(주엽동 강선마을)				
						정윤영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길35-10,3-1008(신사동 미성아파트)				

금곡동 소로1-2호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변경	404-20	도	1	1	정인영	서울 동작구 등용로127,103-1103(대방동 현대아파트)					
					정정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78,문래우정아파트1 01-406					
					정주영	인천 서구 가석로412,16-201(가정동,대 진빌라)					
					정지영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06,비동1307호(장항 동,코오롱레이크폴리스아이)					
					정진영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57,101-1505(홍제동 ,무악재한화아파트)					
					정필영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59길22(사당동)					
					정혜영	성루 서대문구 홍제내2길50(홍제동)					
					정호원	성루 서대문구 창천동53-36					
	정계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강석로110,511-1501(마두동 ,강촌마을)									
	정계영	서울 강북구 노해로13길92(수유동)									
	정교숙	서울 강남구 연주로30길57 이동4502호(도 곡동 타워벨리스아파트)									
	정교영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401,52-1102(압구 정동 한양아파트)									
	정기영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30,1507-702(주엽동 강선마을)									
	정윤영	서울 은평구 중산로15길35-10,3-1008(신사동 미성아파트)									
	정인영	서울 동작구 등용로127,103-1103(대방동 현대아파트)									
	정정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78,문래우정아파트1 01-406									
	정주영	인천 서구 가석로412,16-201(가정동,대 진빌라)									
	정지영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606,비동1307호(장항 동,코오롱레이크폴리스아이)									
	정진영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57,101-1505(홍제동 ,무악재한화아파트)									
	정필영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59길22(사당동)									
정혜영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길50(홍제동)										
정호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53-36										
53	기정	713-3	도	5	4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3-6	도	4	4	국	국토교통부				
54	기정	684-48	구	55	1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4-61	구	1	1	국	국토교통부				
55	기정	713-4	도	288	18	국	국토교통부				
	변경	713-8	도	18	18	국	국토교통부				
56	기정	383-12	도	508	176	국	국토교통부				
	변경	383-14	도	178	178	국	국토교통부				

■ 지 장 물 조 서 (당초)

금곡동 소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347-5	컨테이너	컨테이너	3×6	18	태영특 수포장 (주)	-		
2	인천	서구	금곡동	342-2	간판	철재	H=2m	1	태양특 수포장 주식회 사	-	(단위:개), 명칭: 태양특 수포장주식 회사	
					작업장	파이프, 천막	5.0×2.8	14				
3	인천	서구	금곡동	338-6	대문	H빔, 함석	H=1.8m	1	우주훈	-	(단위:개)	
					담장	파이프, 함석	H=2m, L=75m	1				(단위:개소)
					컨테이너	컨테이너	4×8	32				
					컨테이너	컨테이너	5.0×2.5	12.5				
4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6-1	담장	파이프, 함석	H=1.2m, L=31m	1	동연금 속(주)	-	(단위:개소)	
					간판	철재, 파 이프	H=4m	1				(단위:개) 명칭(컴퓨 터)
					간판	철재, 파 이프	H=3m	1				(단위:개), 명칭(연천모 터스)
					적재물	프레스기	-	11				(단위:개)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3-2	버스정차 대	철재	1.6×4.8	8	공	인천광역시		
					의자	철재	-	2			(단위:개)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485-1	화장실	블록,슬라브	1.7×3.7	6	신현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	
2	인천	서구	금곡동	485-2	창고	블록,스레트	3.7×8.0	30	이강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1			(단위:주)
					수목	조경수	소나무	1			(단위:주)
3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개인	-	(단위:주)
4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조경수	소나무	4	양형모 외 6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비동 301호(여의도동,한양아파트)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4			(단위:주)
					수목	조경수	개나리	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사철나무	14			(단위:주)
					조경석	석재	-	50			(단위:개)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86	참호	모래주머니	2.0×1.5	3	군부대	-	
6	인천	서구	금곡동	산 87-2	담장	철재철크스	H=1.5m, L=35m	1	개인	-	(단위:개소)
7	인천	서구	금곡동	395	담장	벽돌조	H=1.5m, L=41m	1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5	(단위:개소)
					대문	벽돌, 철재	H=2.5m	1			(단위:개소)
					창고	판넬조	1.2×3.3	4			
					수목	조경수	회향목	10			(단위:주)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단위:주)
					수목	유실수	포도나무	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향나무	5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장미나무	2			(단위:주)
조경석	자연석	-	31	(단위:개)							
8	인천	서구	금곡동	396	창고	파이프, 철막	4.3×9.1	39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수목	유실수	감나무	1			(단위:주)
9	인천	서구	금곡동	396	화장실	블록, 슬라브	1.7×2.3	4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비닐하우스	파이프	8.0×4.5	36			
10	인천	서구	금곡동	684-4 5	관정	콘크리트, 파이프	소공	1	개인	-	(단위:개소)
11	인천	서구	금곡동	477-2, 476	수목	조경수	회향목	20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8-4	(단위:주)
12	인천	서구	금곡동	478-2	가추	목조, 스투트	2.0×4.5	9	양종석	마전리 827 목항아파트 3동 406호	
13	인천	서구	금곡동	산 60-3	참호	모래주머니	2.0×1.5	3	군부대	-	
14	인천	서구	금곡동	399-1	농막	파이프, 비닐	7.5×7.4	56	이윤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리 399-1	
					건사	블록, 스투트	3.0×3.5	10.5			
					건사	블록, 스투트	4.2×3.6	15.12			
15	인천	서구	금곡동	399-2	간판	철재	H=2m	1	(재)대 한예수 장로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단위:개), 명칭:불성교회
					화단	콘크리트, 벽돌	1.2×3.0	4			
					담장	목조	H=1.2m	1			(단위:개소)
					수목	조경수	회향목	1			(단위:주)

■ 지 장 물 조 서 (변 경)

금곡동 소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347-5	컨테이너	컨테이너	3×6	18	태영특 수포장 (주)	-	
2	인천	서구	금곡동	342-2	간판	철재	H=2m	1	태영특 수포장 (주)	-	(단위:개), 명칭: 태영특 수포장주식 회사
					작업장	파이프, 천막	5.0×2.8	14			
3	인천	서구	금곡동	338-6	대문	H빔, 함석	H=1.8m	1	우주훈		(단위:개)
					담장	파이프, 함석	H=2m, L=75m	1		(단위:개소)	
					컨테이너	컨테이너	4×8	32			
					컨테이너	컨테이너	5.0×2.5	12.5			
4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6-1	간판	철재,파이 프	H=3m	1	연천모 터스	인천시 서구 금곡동 336-7	(단위:개), 명칭(연천모 터스)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6-1	담장	파이프, 함석	H=1.2m, L=31m	1	국진유 압기계	-	(단위:개소)
					적재물	프레스기	-	11			(단위:개)
6	인천	서구	금곡동	산 103-2	버스정차 대	철재	1.6×4.8	8	공	인천광역시	
					의자	철재	-	2			(단위:개)
7	인천	서구	금곡동	22	간판	철재, 파 이프	H=4m	1	유지화	-	(단위:개) 명칭(컴퓨 터)

금곡동 소1-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금곡동	485-1	화장실	블록,슬라브	1.7×3.7	6	신현구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	
2	인천	서구	금곡동	485-2	창고	블록,스레트	3.7×8.0	30	이강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85-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1			(단위:주)
					수목	조경수	소나무	1			(단위:주)
					수목	유실수	포도나무	30			(단위:주)
					수목	조경수	주목	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잡목	7	(단위:주)							
3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양형모 외 6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비동 301호(여의도동,한양아파트)	(단위:주)
4	인천	서구	금곡동	484-4	수목	조경수	소나무	4	양형모 외 6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9,비동 301호(여의도동,한양아파트)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4			(단위:주)
					수목	조경수	개나리	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사철나무	14			(단위:주)
					조경석	석재	-	50			(단위:개)
5	인천	서구	금곡동	산 87-2	담장	철재웁스	H=1.5m, L=35m	1	박성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4-2	(단위:개소)
6	인천	서구	금곡동	395	담장	벽돌조	H=1.5m, L=41m	1	최인자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5	(단위:개소)
					대문	벽돌, 철재	H=2.5m	1			(단위:개소)
					창고	판넬조	1.2×3.3	4			
					수목	조경수	회향목	10			(단위:주)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단위:주)
					수목	유실수	포도나무	1			(단위:주)
					수목	조경수	향나무	5			(단위:주)
					수목	조경수	회향목	12			(단위:주)
					수목	조경수	장미나무	2			(단위:주)
조경석	자연석	-	31	(단위:개)							
7	인천	서구	금곡동	396	창고	파이프, 철막	4.3×9.1	39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수목	유실수	감나무	1			(단위:주)
8	인천	서구	금곡동	396	화장실	블록, 슬라브	1.7×2.3	4	신경식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0	
					비닐하우스	파이프	8.0×4.5	36			
9	인천	서구	금곡동	684-4 5	관정	콘크리트, 파이프	소공	1	신은균	인천시 서구 금곡동 388	(단위:개소)
10	인천	서구	금곡동	477-2 . 476	수목	조경수	회향목	20	홍달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8-4	(단위:주)
11	인천	서구	금곡동	478-2	가추	목조, 스투트	2.0×4.5	9	양종석	마전리 827 목향아파트 3동 406호	
12	인천	서구	금곡동	399-1	농막	파이프, 비닐	7.5×7.4	56	이윤중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리 399-1	
					견사	블록, 스투트	3.0×3.5	10.5			
					견사	블록, 스투트	4.2×3.6	15.12			
					수목	유실수	감나무	2			(단위:주)
					수목	조경수	기타잡목	10			(단위:주)
13	인천	서구	금곡동	399-2	간판	철재	H=2m	1	(제)대 한예수 장로교 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단위:개), 명칭:봉성교회
					화단	콘크리트, 벽돌	1.2×3.0	4			
					담장	목조	H=1.2m	1			(단위:개소)
					수목	조경수	회향목	1			(단위: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44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2 월 17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가. 사전통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 금액	위반항목	반송 사유	비고
3	인천31바7525	이*관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88번길 24(송의동)	과태료 10만원	공동사업 구역내 미터기 할증사용	폐문부재	
4	인천31바7525	이*관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88번길 24(송의동)	과태료 20만원	부당요금	폐문부재	

2. 공 고 기 간 : 2016.02.22 ~ 2016.03.08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가.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다. 택시 불편신고 접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45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2 월 17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가. 사전통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 금액	위반항목	반송 사유	비고
5	인천30바9846	박*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23, 208동 1201호	과태료 10만원	부당요금	폐문부재	

2. 공 고 기 간 : 2016.02.22 ~ 2016.03.08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다. 택시 불편신고 접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46호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을 위반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가. 사전통지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부과 금액	위반항목	반송 사유	비고
6	인천31바6411	이*규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 64, 201호 (용현동)	과태료 20만원	부당요금	폐문부재	

2. 공 고 기 간 : 2016.02.22 ~ 2016.03.08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가. 「택시발전법」 제23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주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 나. 공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다. 택시 불편신고 접수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기간 내에 자진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 20% 감경처리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어 감경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032-560-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무처리 특례) 개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무가 서구로 이관(2015.12.31)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지역과 원 도심 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항 수정 및 신설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및 수정

2. 주요내용

- 청라동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조항 신설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 및 판매가격 조항 신설
- 원 도심과의 처리수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라동 전용봉투 가격 인상
- 청라동 음식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제작사양, 판매수수료를 조항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 및 지원 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412, 팩스 032-560-276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한다.

제3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김장철”을 “청라동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며, 청라동에서 사용가능한 전용봉투와 김장철”로, “일정기간을 정하여”를 “사용하는 전용봉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 구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를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구역 내”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설치·운

영자”를 “운영자”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탁 10일 전까지”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을 “해당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삭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관련)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 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0	50	100	

[별표 3] (개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10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 용기	60	3,600	
	120	7,200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사용가능 구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2	120	청라동
	3	180	
	5	300	
	10	600	
	20 (김장쓰레기 전용)	1,200	서구 지역 (청라동 제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p> <p>4.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의4-----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p>	<p>제3조(적용범위) ----- 법 제14조제1항----- -----</p>

· 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 ② (생략)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시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작·보급토록 하며,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별제14조제5항-----

-----.

② -----

-----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청라동은 전용봉투를 사용하며, 청라동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봉투와 김장철 --
- 사용하는 전용봉투를 구분하여 -

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 자료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생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

----- 폐기물처리신고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할 구역 -----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
관할 구역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3. (생략)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

-----.

- 1. -----

----- 폐기물처리신고자 ----- 운영자 -----

-----.

2.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

- 1. -----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
- 2. -----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

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생략)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다. (생략)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내용 -----

-----.

4. (현행과 같음)

5. -----
----- 해당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내용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부과한다.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시행규칙)-----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 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1.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질서유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4,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2.30, 2014.12.31 제12959호(주택법)] [[시행일 2015.12.31]]

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 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12.31]]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 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 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12.31]]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외국인토지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 부터 제124조, 제124조의2,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

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 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제102조,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제14조 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 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3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2. 11)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기반방식 또는 칩(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IV. 세부 시행지침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나. 종량제방식의 적용방법

2) 칩(스티커) 방식

-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단독주택 개별용기 및 공동주택 거점용기에 적용 가능
-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12.6.8)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

□ 위생관리 필요성

-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외관불결·악취발생·세균오염 가능성이 크고, 수거용기의 세균은 손·신발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미생물 조사결과 일반세균 100%, 총대장균 78%, 대장균 31% 검출 ('11.8월 국립환경과학원)
-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후에는 내·외부의 미생물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위생적 관리 필요
 - ※ 세척 및 소독 후 일반세균의 개체 수 조사결과 총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제거율이 모두 100%로 나타남 ('12.2월 국립환경과학원)

□ 위생관리 방향

- 지자체가 월 2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토록 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토록 함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육안관찰·관능검사 결과 청결·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세척이 필요
 ※ 전용용기는 3일이 경과하면 외관이 불결(육안관찰)해지고 5일이 경과하면 악취 발생(관능검사) ('12.1. 국립환경과학원)

□ 위생관리 대상, 주기 등

-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 주체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함(아파트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가 청소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지자체는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위생관리 주기 : 월 2회 이상 실시(하절기(6월~9월)에는 주1회 이상)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치단체는 지역 내의 사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 종량제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x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kg당수집운반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 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다량 배출원으로부터 자발적 감량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적용

예시) 세대당 수수료 부과기준

세대당 배출량/월	20kg 이하	20kg이상 30kg 이하	30kg이상
부과금액(원/kg)	80원	100원	120원

※ 배출구간별 세대수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부담률 향상계획을 고려하여 수수료 가산비율을 결정하고 수수료 산정시 반영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광역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규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를 “규격 및 제작사양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외에”를 “제1항 외에”로 한다.

별표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종류(주 용도)	내부용량 (ℓ)	색상	구 조	비고
단독주택및 소규모 사업장	3	몸체-회색 뚜껑-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5			
공동주택용	60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120			

주¹⁾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몸체)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2.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2ℓ	3ℓ	5ℓ	10ℓ	20ℓ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9×35.5	22×39.5	26×46.5	33×56.5	42×69.5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사양(제5조제1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560-4411~4)

서구 시설관리공단(☎580-1180~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 상기 사양은 2ℓ, 3ℓ, 5ℓ, 10ℓ봉투의 표준 사양임.

※ 글씨체는 명조체로 하고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쓰레기봉투(20ℓ)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
(김장쓰레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라동 제외)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 (☎560-4411 ~ 4)

서구 시설관리공단 (☎580-1180 ~ 5)

공급원 : 단체표준품질인증승인번호와 품질인증표시

제조원 : 업체명(☎ -)

[별표 4]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 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나.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다.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구분	규격	판매가격(원)	공급가격(원)	판 매 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조례 “별표3”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7			
	5ℓ			7.5			
	60ℓ			7			
	120ℓ			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ℓ					7	
	3ℓ					7	
	5ℓ					7.5	
	10ℓ					8	
	20ℓ					7	
전용수거 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생 략) ②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 한다)은 <u>제1항의 규정에도</u>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p>	<p>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도</u>----- ----- -----.</p>
<p>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 집·운반·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 당하는 수급자 2. ~ 3. (생 략) ② (생 략)</p>	<p>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면제) ① ----- ----- ----- ----- ----- -. <u><삭 제></u>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u>규격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 봉투 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u> 음식물류</p>	<p>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 ----- ----- <u>규격 및</u> ----- <u>제작사양과</u> ----- -----</p>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외에-----

-----.

관계법령 발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6 - 25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2.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6. 2. 18. ~ 2016. 3. 4.(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95더9966		
	차명	포터II(PORTERII)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032-560-4877, FAX 032-560-2794)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2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2.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901,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16.1.1.시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일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 1. 위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대표이사 생년월일로 개정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구 청장”을 “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용중에”를 “사용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원상복구전에”를 “원상복구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 20일이내”를 “철거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을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각호에 의거”를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년”을 “해당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기일내에”를 “지정기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30일전까지”를 “3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제2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2월전에”를 “2개월 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위탁신청서

1. 시설명 :

2. 신청자 기재사항

법인명		법인구분	시설(), 지원()
허가기관		허가일자	
허가번호		법인목적사업	
대표이사 성명		대표이사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법인 현소재지			
채정상태	동산 : 원, 부동산 : 원		
사회복지사업 실적	노인복지(○년○월), 영유아보육(○년○월), 아동복지(○년○월), 장애인복지(○년○월) 모자복지(○년○월), 정신보건(○년○월), 부랑아복지(○년○월), 사회복지관(○년○월)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해당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시설(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마.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바. 종사자 확보계획서(종사자별 업무분장사항 포함)

4. 약정사항

가. 수탁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위와 같이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법인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 -----.</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u> (이하 "조례"라 한다) <u>제2조의 규정에 의한</u>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u>각호의</u> 복지시설을 운영한다.</p> <p>1. 2. (생략)</p> <p>3. <u>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p>제2조(복지시설운영)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u> ----- ----- <u>제2조에 따른</u> ----- ----- <u>각 호의</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구청은 조례 제4조에 <u>의하여</u> 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의 부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자는 사용료를 <u>지정기일</u> 내에 구금고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제1호</u></p>	<p>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 <u>따라</u> ----- ----- -----.</p> <p>②----- <u>지정기일</u> ----- ----- -----.</p>

내지 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
용료의 전부를, 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50%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사
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생략)
3. 허가 사용일 30일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허가 사용일 15일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
임) ①사용자가 노인여가복지시
설을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
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
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는 원
상복구전에 구청장과 사전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50퍼센트-----.

1. ----- 그 밖의 -----

2. (현행과 같음)
3. ----- 30일 전에 --

4. ----- 15일 전에 --

제4조(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
임) ①-----
----- 사용 중에 -----

-----.

②----- 제1항에 따라 ---

-----.

원상복구 전에 -----
-----.

③----- 제2항에 따른 ---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위탁공고) ① (생략)

②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탁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전년도 수지계산서 각 1부
- 4. ~ 7. (생략)

----- 철거일로부터 20일 이내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탁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따라 구 시설관리공단 -----

제6조(위탁신청) ----- 제3조 -----

----- 각 호에 따라 -----

- 1. 2. (현행과 같음)
- 3. 해당년 -----

- 4. ~ 7.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사업 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서구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적격법인을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기일내에 구청장과 위탁관리운영협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규정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연장 및 해지)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①-----
 ----- 제3조-----

 ----- 검토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②----- 제1항에 따라 -----

 ----- .

제8조(위탁협약등) ①제7조제2항에 따라 -----
 ----- 지정기일 내에 -----
 ----- .
 ②----- 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

제9조(연장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

 ----- 30일 전까지 -----
 ----- .
 ②----- 제6조에 따라 -----

탁자가 수탁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탁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예정 2월전에 수탁자에게 위탁협약해지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 또는 장비를 임대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임대기간은 구청장과 협약한 수탁기간 범위내로 하여야 하며, 사용료 산정과 사용료 납기

-----.

③----- 및 제2항에 따라 -----

----- 30일 이내-----
-----.

④----- 제7조에 따라 -----

----- 2개월 전에 -----
-----.

제10조(운영 및 임대) ①-----

-----.

----- 범위 -----

-----.

②----- 제1항에 따라 -----

-----.

③----- 범위 -----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임대기간 연장 허가는 반드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는 납기 익일부터 일할계산하되, 납부 전일까지 연리 1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서구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따른 -----

----- 15퍼
센트-----.

제11조(준용) -----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58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6. 2. 22. ~ 2016. 3. 7(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경리팀(032-560-4154)

2016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연번	예치 건명	예치자	예치일자	예치금액(원)	납입부서
1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임선경	2010-12-28	4,570	건축과
2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기여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	민동자 외 3	2010-12-28	17,320	세무1과
3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배애선	2010-12-28	4,410	환경보전과
4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안미선	2010-12-28	4,570	건축과
5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김호연	2010-12-28	6,470	여성보육과
6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박용옥	2010-12-28	4,820	생활보장과
7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김수희	2010-12-29	6,770	여성보육과
8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오성애	2010-12-29	6,770	여성보육과
9	12월 봉급공제금	윤여일	2010-12-29	2,830	토지정보과
10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장금별	2010-12-29	6,770	노인장애인복지과
11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이연순	2010-12-30	4,570	건축과
12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안외숙	2010-12-30	4,410	총무과
13	12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오민영외 8명	2010-12-31	46,630	총무과
14	2010년 12월분 추가징수(건강보험료)	박주상외4명	2011-01-10	12,685	총무과
15	2010년 검단출장소 녹지관리원 보험료 정산금액 미 반환금	오해순 외 2명	2015-10-06	90,130	공원녹지과
			계	223,72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6 - 2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3-96(2013.10.2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중로3류390 및 소로3류2호선, 사업명:주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 2.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0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 중3-390, 소3-2호선)사업
 - 명 칭 : 주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사회복지시설 : $A = 8,113\text{m}^2$
 - 도 로 : (중로3류390호선) $L = 12\text{m}$, $B = 12\text{m}$, $A = 166\text{m}^2$
(소로3류2호선) $L = 71\text{m}$, $B = 4\text{m}$, $A = 278\text{m}^2$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재)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 이사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58)
5. 사업기간 : 2013. 10. 28 ~ 2015. 11. 17.